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신용하 의원 외 1 인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발 의 자 : 신용하·추은희 의원(2인)

찬 성 자 : 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

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

장미경·정지원 의원(10인)

1. 제안이유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의 외국인 근로자 피해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호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신설(안 제7조)

다. 위탁 근거 신설(안 제11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
-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 3) 「근로기준법」 제6조
-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부서검토: 노동복지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각종 지원사업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7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교육 지원
2. 사용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사업장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 위험성 감소조치 권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따로 진행하여

야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 국적에 따른 언어 및 문화 등을 고려하여 통역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에서 제작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시장은 관할 지역 내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p> <p>① (생 략)</p> <p>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8.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각종 지원사업</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①</p> <p><u>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u></p> <p>1. <u>산업재해 예방 교육 지원</u></p> <p>2. <u>사용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u></p> <p>3. <u>사업장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 위험성 감소조치 권 고</u></p> <p>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u>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따로 진</u></p>

제7조 ~ 제9조 (생략)

<신설>

제10조 (생략)

행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 국적에 따른 언어 및 문화 등을 고려하여 통역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에서 제작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1조(위탁) 시장은 관할 지역 내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노동복지과

조 례 명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제4조의 3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6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호 신설(안 제5조) ○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신설(안 제7조) ○ 위탁 근거 신설(안 제11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5조, 제7조의 개정내용은 산업재해 취약 계층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의 경우 위탁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문언 중 “국내·외”라는 표현이 구미시 관할 외의 해외 지역에까지 적용된다는 혼동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법」 제4조의2와 제4조의3에 따라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관할 지역 내라는 공간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국적 등에 따른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외” 표현 대신에 “관내의” 혹은 “관할 지역 내의”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 감소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7조(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제11조(위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노동복지과 노동안전팀 장철호(☎480-6208)